

입찰 유 의 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행하는 “개인정보·보안실태 점검 및 ISMS 인증 컨설팅”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참가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관련 규정 및 국가계약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입찰참가신청)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제4조의 서류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조합 소정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4. 실적증명서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8. 입찰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②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원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실적증명서는 조합 소정양식에 의하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발주처의 “실적증명서”(“원본과 같음”을 명기한 사본 포함)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합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5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

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 4 조 (입찰에 관한 서류)

조합은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3조에 정한 서류를 심사한 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한다.

1. 제안요청서
2. 계약서(안)
3. 가격입찰서(조합 소정서식)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5. 기타 부대서류

제 5 조 (관련절차 등의 숙지)

- ① 입찰참가자는 이 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절차 및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② 입찰참가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합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입찰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조합의 홈페이지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하며, 공지사항에 대한 확인 의무는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 6 조 (입찰보증금)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 ④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 7 조 (입찰참가)

-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를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가격입찰서 작성)

- ① 가격입찰서는 조합 소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③ 가격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④ 가격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 ⑤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제 9 조 (가격입찰서의 제출)

- ① 가격입찰서는 봉함하여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격입찰서는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11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가격입찰서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가격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6.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진행 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밀봉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2통 이상의 가격입찰서가 포함된 입찰
8.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9.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한 입찰

제 12 조 (입찰의 연기)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협상참가요청 통보문서에 기재된 입찰 관련 일정 및 협상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 13 조 (재공고입찰)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절차는 조합의 규정에 따른다.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제 14 조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결정)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은 조합이 제안요청서와 함께 교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제 15 조 (낙찰자의 결정)

- ① 조합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 ② 조합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해당 협상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체결)

- ① 낙찰자는 조합의 협상성립 통보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 (계약보증금)

-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공개한 사업비의 100분의 70 미만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참가자는 조합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등)

-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입찰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때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일로부터 3년간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1항의 행위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타사항)

- ①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 ② 입찰참가자는 조합의 계획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③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 일체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